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협의회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94년 5월 6일
- 나. 제안자 : 부 천 시 장
- 다. 회부일자 : 94년 5월 6일
- 라. 상정일자 : 94년 5월 16일(2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김충신)

가. 제안이유

- 중동신도시 건설지역 회정측량 결과 일부지역이 계획선과 상이하여 조정이 요구되며, 1개의 아파트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에 위치하여 주민생활에 혼란을 주는 등 불합리하게 회

정된 지역의 경계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정하고자 함.

나. 큰 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사전 시민의견 수렴절차와 방법은?	지역 주민과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 수렴이 되었고, 대다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사안임.
계획안대로 경계조정이 될 경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사전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시 의견대로 의견서 채택(별첨)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

- 기존 법정동 간의 불합리한(주민생활권 및 교통편) 지역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하므로써 임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경계를 조정함에 있어 사전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사안으로 시의견대로 경계조정함이 타당함.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의안번호	268
의결 년월일	94. 5. 17 (제28회)

제출년월일: 1994. 5. 6

제출자: 부천시장

□ 배 경

- 중동신도시 건설지역 회정측량 결과 일부지역이 계획선과 상이하여 조정이 요구되며,
○ 1개의 아파트단지가 두 개의 법정동에 위치하여 주민생활에 혼란을 주는 등 불합리하게 획정된 지역의 경계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정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정대상 지역

- 원미구 약대동 → 오정동 산정동(13필지 14,571㎡)

• 중동신도시 건설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현행 구간 및 법정동 경계와 회정측량 결과가 일부 상이하여 한 필지의 땅이 2개구 2개동 2필지로 분리되어 구·동 간 경계가 혼란을 주고 불편을 주므로 도로중앙을 경계로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코자 함.

○ 원미구 심곡동 → 원미구 중동(45필지 6,145㎡)

- 구획정리사업시 재취지역으로 위치나 생활여건이 중동과 일치하나 행정동이 심곡 3동으로 되어 있어 불편을 느끼므로 생활권과 일치시키고자 함.

○ 소사구 소사본동 → 소사구 괴안동(8필지 8,035㎡)

- 괴안동 삼익세라믹 아파트단지는 10개동 35,619㎡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3개동 8,035㎡가 소사본동 지번에 걸쳐 있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괴안동으로 일치

□ 경계 획정 수단

- 기존 구간 경계 및 법정동 경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동신도시의 신설되는 도로 및 기존도로, 아파트단지 등을 경계로 획정하였음.

□ 주요 경계 획정 내용

— 구간 경계 조정 —

○ 원미구 약대동 → 오정구 삼정동

: 중동신도시의 신설되는 도로의 중앙으로 경계 획정

— 법정동 경계 조정 —

○ 심곡동 → 중 동

: 기존 25m 도로를 경계로 주민생활권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경계 획정

○ 소사본동 → 괴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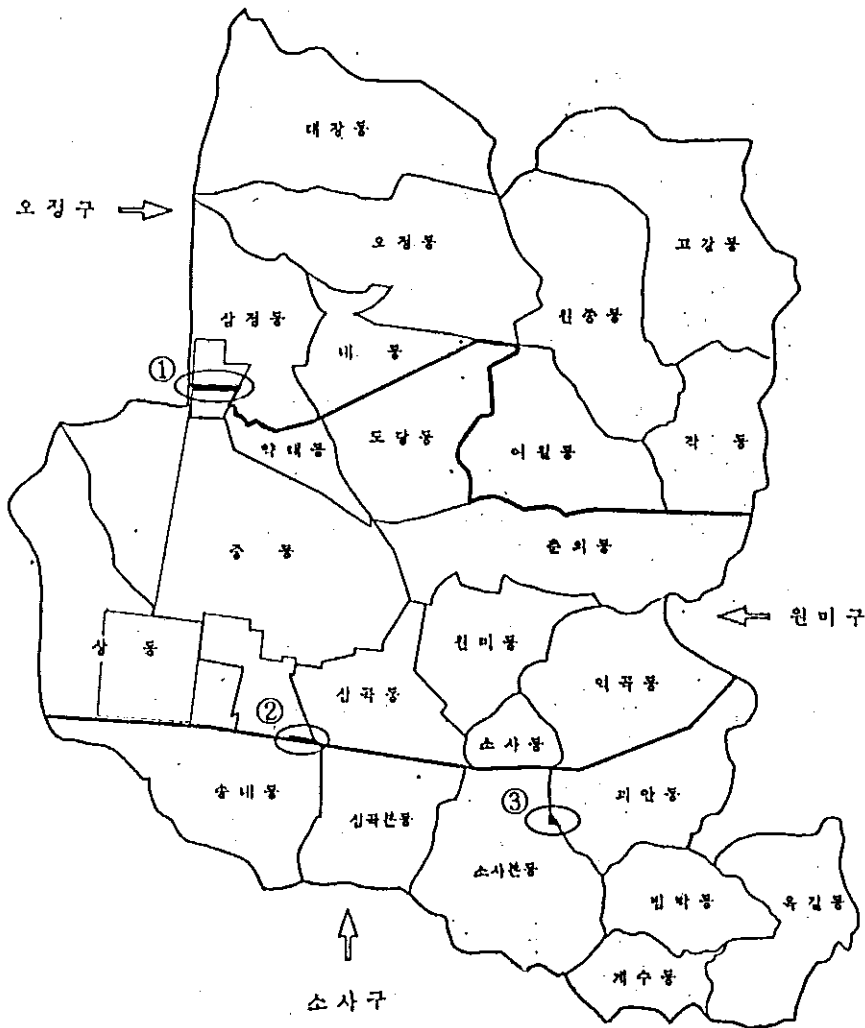
: 기존 행정동 관할구역으로 삼익세라믹아파트 단지를 경계로 획정

□ 시 의견

- 중동신도시 획정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를 획정하고, 기존 법정동 간의 불합리한(주민생활권 및 교통편) 지역과
-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2개 법정동에 위치하므로써 야기되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조정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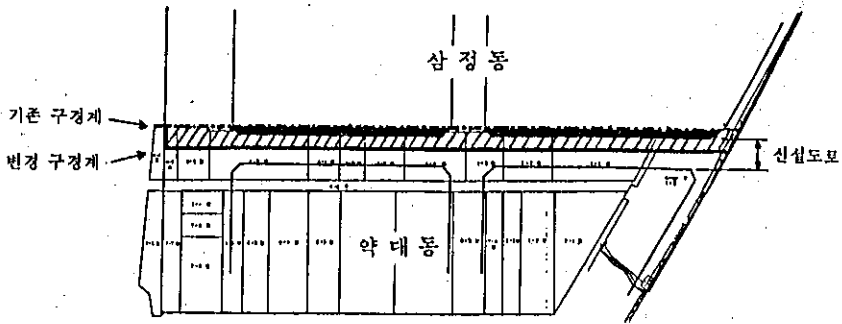
□ 시의회 의견?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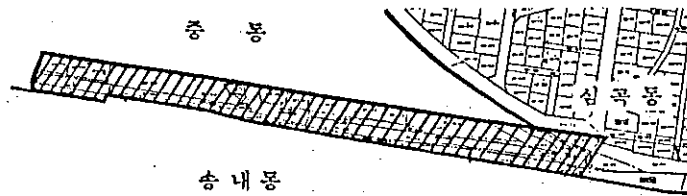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세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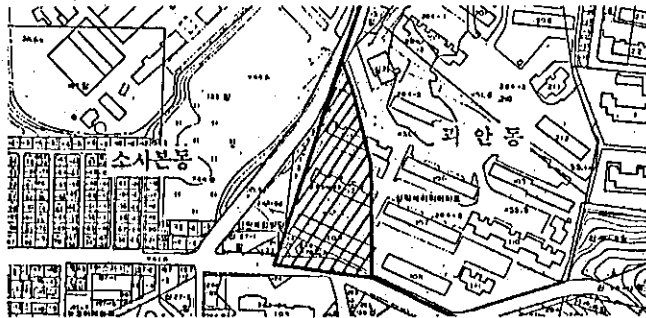
① 원미구 약대동 → 오정동 삼정동(14,571㎡)



② 원미구 십곡동 → 원미구 중동(6,145㎡)



③ 소사구 소사본동 → 소사구 괴안동(8,035㎡)



의 건 서

의 안 번 호	268	안 건 명	부천 시 구 및 법정동 경계조정안
제 출 자	부 천 시 장	의결년월일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94. 5. 17)

- 기존 법정동 간의 불합리한(주민생활권 및 교통편) 지역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하므로써 임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경계를 조정함에 있어 사전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사안으로 시의견대로 경계조정함이 타당함.

1994. 5. 17.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이 강 진